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69호 2020. 6. 11.(목)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668호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사천시 조례 제1669호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670호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사천시 조례 제1671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사천시 조례 제1672호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 12
○ 사천시 조례 제1673호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13
○ 사천시 조례 제1674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사천시 조례 제1675호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사천시 조례 제1676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사천시 조례 제1677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사천시 조례 제1678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 사천시 조례 제1679호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 사천시 조례 제1680호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41
○ 사천시 조례 제1681호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사천시 조례 제1682호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45
○ 사천시 조례 제1683호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50
○ 사천시 조례 제1684호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 사천시 조례 제1685호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 사천시 조례 제1686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62
○ 사천시 조례 제1687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39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1
- 사천시 규칙 제740호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1
- 사천시 규칙 제741호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84
- 사천시 규칙 제742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7
- 사천시 규칙 제743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9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87호 사천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93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7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 ----- 94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734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100
- 사천시 공고 제736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101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조례 제166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은” 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으로, “별지 제 8호 서식” 을 “별지 제8호서식” 으로, “미리” 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 를 “그 의원의”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조례 제166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지원에 의해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관내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예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및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 를 “5·18민주유공자·「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로 한다.

②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법령” 을 “법령 또는 조례” 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란 다음에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	-----	--

④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조례 제167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질서유지·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3조제1항 중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 및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를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이하 “명예경찰대”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명예경찰대 대원은 외국인으로서 사천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명예경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
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중 “방범대와 연합회” 를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 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범대 및 연합회” 를 각각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 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방범대 또는 소속대원” 을 “방범대, 연합회, 명예경찰대 또는 그 소속대원” 으로, “행위로 방범대에 대한” 을 “행위를 하여 그 단체 또는 조직에 대한”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방범대 및 연합회” 를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로 한다.

제10조 중 “방범대와 대원에게 「사천시 포상 조례」”를 “방범대, 연합회, 명예경찰대 및 그 소속대원에게 「사천시 포상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조례 제167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를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공설장례시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설장례시설”이란 장례와 제사 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빈소, 안치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신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사용신고사항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사용권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허가를”을 각각 “사용권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용허가를”을 각각 “사용권을”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15년씩 2회에 한하여”를 “30년으로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별표 1] <개정 2020.6.11.>

##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제2항 관련)

### 1. 공설묘지

#### 가. 사용료

기준	사용료(원)	비고
3.3제곱미터당	30,000	

#### 나. 수수료

종별	단위	수수료(원)	비고
묘지관리	1기	23,000	

### 2. 화장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성인(15세 이상)	1구	70,000	<u>500,000</u>	
소인(15세 미만)	1구	50,000	300,000	
개장 유골	1구	40,000	150,000	
태아	1구	35,000	120,000	
그 밖의 적출물	Kg	1,000	3,000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 3. 봉안당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봉안기간 15년	1기	200,000	1,000,000	- 기간연장(15년 단위):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2기(부부 등)	400,000	2,000,000	
봉안기간 5년	1기	140,000	사용불가	무연분묘

\* 관내 및 관외의 구분은 최초안치일 기준으로 하고, 2기의 주소가 각각 관내 및 관외로 다를 경우의 사용료는 각각 1기 기준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4. 자연장지

구분	기준	면적(m <sup>2</sup> )	사용료(원)	비고
개인용	1구	0.25	300,000	-사용료 : 30년 기준 -기간연장(30년 단위): 한 차례만 연장
가족(2구)	1개소	0.50	600,000	
가족(4구)	1개소	1.00	1,200,000	
가족(6구)	1개소	1.50	1,800,000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조례 제167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사천시 조례 제167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의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임)** 시민은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조례 제167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제8조의4(코로나19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0년 8월에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은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2.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조례 제167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총 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등” 을 “처분 등” 으로, “각호의 자” 를 “각 호의 사람”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2월 31일까지 로” 를 “12월 31일까지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도에 의한다” 를 “연도로 한다”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11조제1항 중 “사전협의후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를 “사전협의 후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를 각각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 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등재후” 를 “등재 후” 로 한다.

제16조 중 “연도말” 을 “연도 말” 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사용할 수 없는” 을 “사용할 수 없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천만원” 을 각각 “1천만원”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 규정” 을 “제17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공동사용하는” 을 “공동 사용하는”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훼손” 을 “훼손”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운용카-드” 를 “운용카드”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물품카드 등록부

제26조제2항 중 “장부작성” 을 “장부 작성” 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를 “제1항에도”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로 하여금” 을 “사람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입회한다” 를 “입회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제32조 중 “5일이내” 를 “5일 이내” 로 한다.

제34조 중 “시장 또는 청·소” 를 “시장 또는 관서” 로, “자로 하여금” 을 “사람에게”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조례 제167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전용사용자” 라 함은” 을 “ “전용사용자” 란” 으로, “자를, “전용료” 라 함은 전용자” 를 “사람을, “전용료” 란 전용사용자” 로 한다.

1. “사천시 체육시설” 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부대시설” 이란 사천시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2조제4호 중 “ “이용자” 라 함은” 을 “ “이용자” 란” 으로, “자를, “이용료” 라 함은” 을 “사람을, “이용료” 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 “관람자” 라 함은” 을 “ “관람자” 란” 으로, “자를, “관람료” 라 함은” 을 “사람을, “관람료” 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 “사용자” 라 함은” 을 “ “사용자” 란” 으로, “자를, “사용료” 라 함은” 을 “사람을, “사용료” 란” 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 “단체입장” 이라 함은” 을 “ “단체입장” 이란” 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를 “인솔자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 “기본액” 이라 함은” 을 “ “기본액” 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 “시설이용료” 라 함은” 을 “ “시설이용료” 란” 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 “학생” 이라 함은” 을 “ “학생” 이란” 으로, “19세 이하인 자와” 를 “18세 이하인 사람과” 로 한다.

10. “유아” 란 2세 이상 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어린이” 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코자 하는 자는” 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으로, “관람요액을” 을 “관람료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연습사용)코자” 를 “이용(연습사용)하고자” 로, “허가에 같음한다” 를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① 사천시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축구장, 등)(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를 “문화예술행사”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고지한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란케 하는 자”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사용기간을”을 “사용시간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초과사용기간이”를 “초과사용 시간이”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13조제1항 본문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경기종료후” 를 “경기종료 후”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등)” 을 “체육시설” 로,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등)” 을 “체육시설” 로, “자가” 를 “사람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군인·학생·어린이·노인(65세 이상인 자)” 을 “군인·학생·어린이·경로우대 대상자” 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관람증) ① 시장은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료관람 대상자에게 관람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 를 “사람으로서” 로,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2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별표 1] <개정 2020.6.11.>

##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초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삼천포보조체육관 (부대시설 제외)	초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궁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족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 단 체 는 같은 동호 회나 같은 소속의 구 성원이 1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마사	"	5,000	6,000	
	단체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마사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8	20% 할인

##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궁도장	개인	1회 2시간	2,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1사대 기준
인공압벽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4.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일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 5. 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인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 경로대상	40,000		
	체력단련실이용	10,000		
	월 강습료	10,000		
수영복 대여료	수모	1,000		
	수경	1,000		
	수영복	2,000		

##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단위: 원)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30,000	20,000	2,000	단체는 10명이상
<b>다목적실</b>	<b>30,000</b>	<b>20,000</b>	<b>2,000</b>	
에어로빅장	30,000	20,000	2,000	
탁구장	30,000	20,000	2,000	
헬스장	35,000	25,000	2,500	

- 이용시간 : 1명 당 1회 2시간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 월 회원 매월 기준
- 사천시 거주자 우선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 7. 중계 방송료

종 별	기 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 8.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 1개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1등급	8,000원	
	2등급	6,000원	○ 1등급 :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에드벌룬 및 유사물 계양 에 의한 행 위	1일 1개	3,0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별표 2] <개정 2020.6.11.>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및 배우자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5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수업	50%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5% 추가 할인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사천시 조례 제167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조례 제167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호자”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
5. “가족단위 관람객”이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9조제1항 중 “3일 이내” 를 “24시간 이내”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어린이” 를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장료” 를 “별표 2에 따른 입장료”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가족단위 관람객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소” 를 “주소 남/여”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별표 2] <개정 2020.6.11.>

## 바다낚시공원 입장료

구 분	단 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회	2,000원	1,000원	
청소년		1,000원	5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별표 3] <개정 2020.6.11.>

## 바다낚시공원 이용료

구 분		단 위	요 금	비고
당일이용	성인	1회	20,000원	
	청소년		10,000원	
회수이용	성인	회수권 1권 (12회분)	200,000원	
	청소년		100,0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별표 4] <개정 2020.6.11.>

## 바다낚시공원 해상펜션 이용료

구 분	기준정원	최대정원	요 금			비 고
			성수기	비수기		
				평 일	주 말	
1일 / 1실	5명	10명	250,000원	200,000원	230,000원	

- ※ ① 성수기는 7~9월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② 비수기는 평일과 주말로 나누되,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월요일 ~ 목요일
  - 주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전일 ~ 공휴일
-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③ 해상펜션의 입실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퇴실시간은 익일 오전 10시까지이며, 퇴실시간 초과 1시간부터 3시간까지는 100,000원,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의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 ④ 해상펜션의 사용료는 기준정원(5명)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정원 미만 시에도 기준정원 요금을 징수하며,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단, 이 경우에도 최대정원(10명)을 초과해서 수용할 수는 없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조례 제167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른 항공사업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를 “항공사업자”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자”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호 중 “항공법에 의한”을 “「항공사업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조례 제168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중 “이 회계”를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8조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없이” 을 “지체 없이”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제1호 서식” 을 “제1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하여 시장이 발부한다” 를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조례 제168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별표 1] <개정 2020.6.11.>

## 시장 명칭과 위치

구 분	명 칭	주 소	장날	비고
상설시장	사천읍시장	사천읍 시장1길 16 일원		
	삼천포전통수산물시장	어시장길 46(서동) 일원		
	삼천포중앙시장	중앙시장1길 12-39(선구동) 일원		
	삼천포용궁수산물시장	어시장길 64(동동) 일원		공설
정기시장	곤양종합시장	곤양면 남산로 65 일원	5, 10	공설
	완사시장	곤명면 완사2길 12 일원	1, 6	공설
	서포시장	서포면 자구로 473 일원	4, 9	
	삼천포종합시장	새시장길 19(동금동) 일원	4, 9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사천시 조례 제168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사천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사천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후
-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 ② 이차보전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지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9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업무협약에 대한 통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따른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과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사천시 조례 제168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65세 이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한 번으로 한정한다.

**제4조(비용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에 따라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1.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두 번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사천시 조례 제168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를 “조례는 「국  
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으로, “제16조의4제1항제1호” 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 로 한  
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 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 사 천 시 공 보

제 669호

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5시간” 을 “4시간” 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6.11.>

##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사천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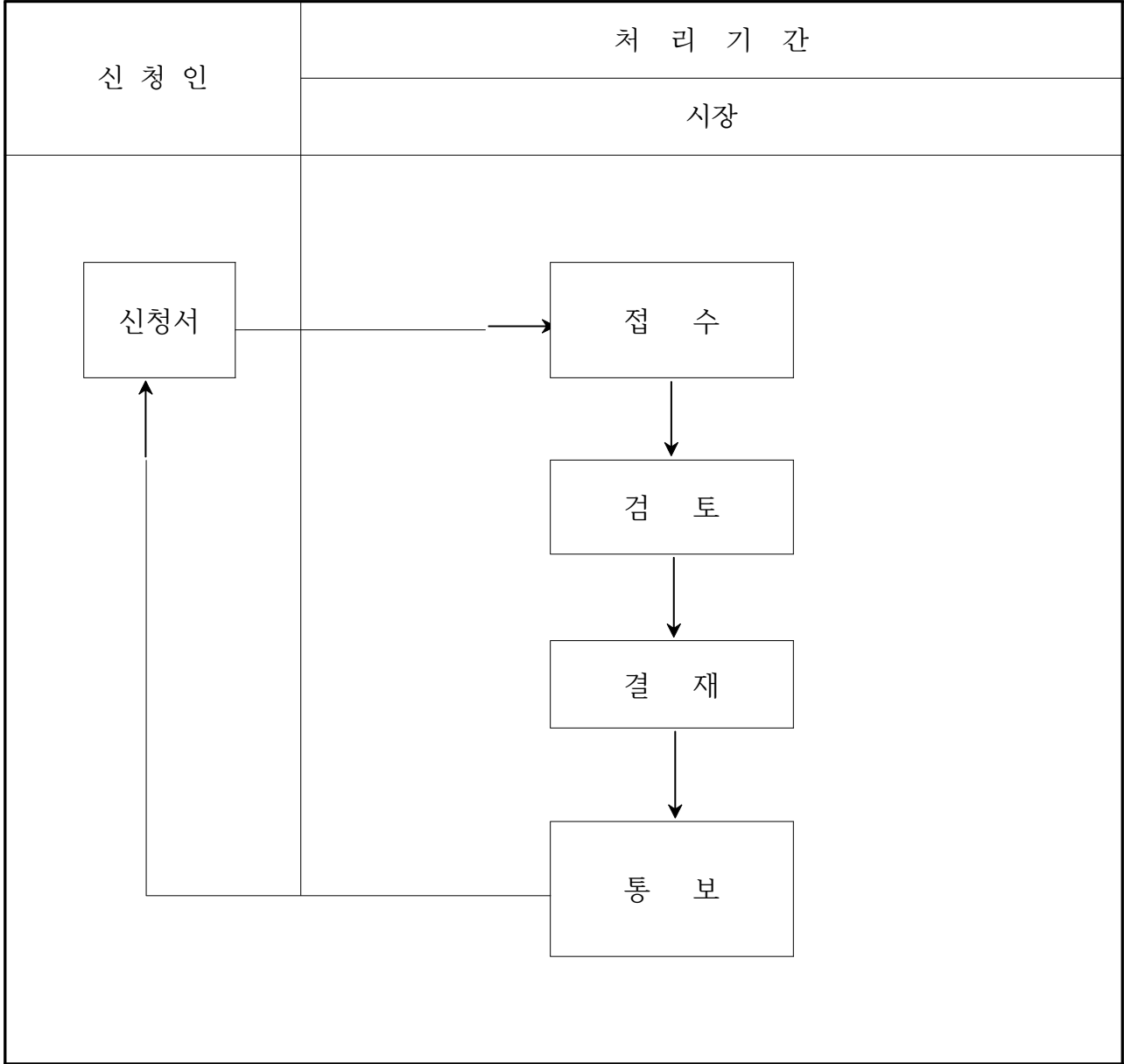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6.11.>

##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6.11.>

##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사천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6.11.>

##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및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사천시 조례 제168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사천시 조례 제168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하고,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주민의 공동급수” 를 “2호 또는 2개소 이상의 공동급수” 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급수공사의 비용” 을 “급수공사” 라고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청하여야 한다” 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10조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의 소유로 한다”를 “시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도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부담금의 정산)”을 “(원인자부담금의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인자부담금”을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6조)의 제목 “(부담금 산출기준)”을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4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을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으로, “산출근거는”을 “산출기준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각각 “정한다.”로 한다.

- ① 급수공사 중 당해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급수신청인이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20조제2항 중 “정하는 바에 따른다.” 를 “정한다.” 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급수용도를” 을 “급수업종을” 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급수설비의 권리·의무가 변동된 때

제22조제3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관하여는” 을 “관한 사항은”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설소화용” 을 각각 “소화용” 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수도요금의 정산)” 을 “(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하여” 를 “의해”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에 대하여는” 을 “주택은” 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업종을 달리하는 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업종 구분 시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되 총 사용량 중 가구당 15세제곱미터는 가정용을 적용하고, 나머지 양은 해당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그러한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을 “수도요금은”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⑤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소유자(건물, 토지)에게 체납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한 사람에게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금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가정용은 시설사용량의 70퍼센트, 일반용 및 목욕장용은 시설사용량의 50퍼센트 감면
2.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견이 어려운 지하누수(벽체 속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가 있었던 달 가운데 가장 사용량이 많은 달 기준으로 누수 전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하는 사용량의 50퍼센트 감면.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면제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장(수도업종 중 일반용, 대중탕용)과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별표 3)에 따른 항공기용 부품제조업(C31322) 중 경영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30퍼센트 감면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가구분할을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감면
  7.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감면
  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 적용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절차 및 방법 등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에 따른 정수처분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에 따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다.

②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미납된 수도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 5년
2. (채무) 과오납된 수도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 5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부과 분부터 7월 부과 분까지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사천시 조례 제168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원인자부담금 추산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신청 시(임시 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구체적인 부과 및 납부방법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또는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17조제4항 중 “개산액” 을 “추산액”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하수도 업종 중 일반용, 대중탕용)과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별표 3)에 따른 항공기용 부품제조업(C31322) 중 경영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그 밖의 부담금 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가산금 및 증가산금 징수는 할 수 없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8-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2 및 별표 8-2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부과분부터 7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별표 8-2] <개정 2020.6.11.>

##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범위 및 감면량(율)	비고
하수도 사용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으로서 가정용 사용단계 1단계(1~20㎡)에 해당하는 사용자	1단계 사용요금의 30% 감면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사용자	면제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하수도 업종 중 일반용, 대중탕용)과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별표 3)에 따른 항공기용 부품제조업(C31322) 중 경영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30% 감면	
	3.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대상지의 사용자	면제	
	4.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의 50% 감면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사천시 규칙 제73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사용허가 신청)” 을 “(사용신고)”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을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으로, “신청서” 를 “신고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허가 신청  
서” 를 “사용신고서” 로, “허가증” 을 “신고증” 으로, “신청인” 을 “신  
고인” 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를 “(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  
고)” 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용허가를 받은” 을 “사용신고를 한” 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5조제1항 중 “사용허가를 받은” 을 “사용신고를 한”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별표 2] <개정 2020.6.11.>

##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제8조 관련)

### 1.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및 방법 등

#### 가. 시설기준(면적)

- 개인용 : 가로 50센티미터 × 세로 50센티미터
- 가족용(2인) : 가로 50센티미터 × 세로 100센티미터
- 가족용(4인) : 가로 100센티미터 × 세로 100센티미터
- 가족용(6인) : 가로 100센티미터 × 세로 150센티미터

#### 나. 방법

- 개별표지는 검정색 재질의 석물을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로 하며, 지면으로부터 3센티미터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2. 공설자연장지 내에서의 행위 제한

- 가.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 나.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의 설치
- 다. 취사, 소풍,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 라.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 바.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자연장지 운영·관리에 방해가 되는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6.11.>

## 시립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지	
사 망 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신 고 내 용	신고시설	신고번호		제 호
	공설묘지	분묘위치	사업명	
	공설봉안당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1회, 2회, 3회 연장)		
	공설자연장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 1회 연장)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 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 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당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6.11.>

## 시립 장사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지			
신고일자(번호)				
사망자	성명		성별	
	주소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신고사항 변경 신고내용	당초		변경	
구비서류	사용권 승계 : 동의서(인감증명서), 연고자의 권리 관계 확인 서류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6.11.>

## 시립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지		
신고일자(번호)			
사 망 자	성 명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입금계좌번호		
신 고 사 항	사용권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실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납부한 사용료 등		반환신청금액	
반환사유			
구비서류	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비 고	반환금액은 계좌입금 함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6.11.>

## 시립 장사시설 유골 인수증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		
신고일자(번호)			
사 망 자	성 명		
	주 소		
	사망일자		
인 수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인수일자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의 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 사천시 규칙 제74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2) 중 “담당관·단·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를(3)으로 하고, 같은 목에(2) 및(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2) 물품운용관 - 각 과장

(4)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중 “의한다” 를 각각 “따른다” 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거” 를 “따라” 로 한다.

제9조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0호 서식에 의한” 을 “제10호서식의” 로, “의거” 를 “따라” 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관리전환하고자” 를 “관리 전환하고자”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를 “제16조에 따라” 로, “이루어진것으로” 를 “이루어진 것으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 를 “따라” 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0백만원” 을 “5천만원” 으로, “회계주무과장-단가 30백만원이하” 를 “회계담당국장-단가 3천만원 이하” 로, “10백만원이하” 를 “1천만원 이하”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백만원이하” 를 “1천만원 이하” 로, “5백만원이하” 를 “5백만원 이하” 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7조 중 “의하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을 “따르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를 “(외국산물품 취득전 검토조서)” 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 를 “외국산물품 취득전 검토조서”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9호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규칙 제74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등)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제외업종은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제4조(협약체결)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이차보전금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사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제6조(변경사항 통보) 용자를 받은 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 사천시 규칙 제74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를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내누수로”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지” 를 “옥내누수가 발생한 요금고지서를”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를 “조례 제3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장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를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로 하며, 같은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조 제3항 중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를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을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감면”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대상자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 및 제19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9호

사천시 규칙 제74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가  
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 또는 식품영업신고 등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신고사  
항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영업신고 등의 사항을 원인자부담금 부과부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추산금액과 납입예정 기  
한을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②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타행위에 한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분납은 1회에 40퍼센트, 2회와 3회에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 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하며,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의 제목 “(가산금의 납입독촉)” 을 “(납입독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 을 “독촉장” 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9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6.11.>

뒷면

제 호				
독 축 장				
종 목	연 도	월 분	체 납 액	비 고
			하 수 도 사 용 료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우 편 엽 서

앞면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우 표

□□□□□

사천시

읍 . 면 . 동

번지

읍 . 면 . 동

로 . 길

아파트

동

호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사천시 훈령 제387호

사천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특별보좌관” 을 “사천시 정책특별보좌관(이하 “정책특별보좌관”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 중 “1년” 을 “2년” 으로 한다.

제5조 중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 를 “사천시”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9호

사천시 고시 제2020-767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을 고시 합니다.

2020. 6. 11.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사항

- 확정측량으로 면적 변경

건축물 사업규모			대 지 현 황				비고
용 도 (세대수)	연면적 (㎡)	층수 (동수)	지 번	용 도 지 역	지목	면적(㎡)	
공동주택 (아파트- 1,7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37,459.8642	지하2 지상10~19 (주28동)	정동면 예수리 산64-18번지 외 106필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형지구단위)	전,답, 도,대, 담,과, 묘,구	98,774→ 98,711.1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산64-18번지의외 106필지

(산61-9, 산66-9, 269-2, 835-7, 803-3, 803-1, 599-13, 792-5, 796-2, 795-6, 795-5, 795-8, 795-7, 795-2, 795-1, 794, 792-17, 830-4, 832, 836, 산61-2, 산61-7, 산62, 335-16, 335-17, 812-13, 812-5, 812-4, 812-3, 812-2, 812-1, 812, 347-7, 348, 802-2, 산66-2, 809, 808, 807-4, 807-3, 807-2, 807-1, 811, 810-3, 339-2, 340, 341, 341-1, 342-1, 342-2, 342-3, 343, 343-1, 268-1, 812-11, 812-10, 812-9, 812-8, 812-7, 812-6, 797-1, 271, 272, 269-1, 270, 273, 273-1, 344, 344-1, 344-2, 347-2, 347-4, 347-5, 347-10, 산66-11, 810, 806-2, 806-1, 803-6, 803-5, 807, 806-5, 806-4, 802-1, 802, 800-4, 산66-17, 산66-14, 산66-13, 813, 814, 812-12, 337, 337-1, 337-4, 338-1, 338-2, 339, 339-1, 599-14, 349-1, 803-2, 803-4, 835-4, 275-16, 599-24)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 ~ 2020. 06. 3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의제(일괄)처리 되는 사항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나. 개발행위(변경)허가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 사천 예수지구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산64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학교)사업

나. 명 칭 : 예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 경**]

구 분		규 모		비 고
		기 정	변 경	
도 로	중로 1-16호선	· B=3m, L=211m, A=613㎡	· B=3m, L=211m, A=613㎡	
	중로 1-47호선	· B=20m, L=179m, A=3,781㎡	· B=20m, L=179m, A=3,781㎡	
	중로 3-46호선	· B=11m, L=118m, A=1,184㎡	· B=11m, L=118m, A=1,184㎡	
	소로 3-160호선	· B=4m, L=237m, A=799㎡	· B=4m~8m, L=237m, A=1,281㎡	증) 482
공 원	어린이공원 29	· A=2,757㎡	· A=2,747㎡	감) 10
녹 지	완충녹지 11	· A=1,210㎡	· A=1,209㎡	감) 1
	완충녹지 12	· A=1,520㎡	· A=1,520㎡	
	경관녹지 22	· A=7,338㎡	· A=3,515㎡	감)3,82 3
	경관녹지 72	· A=2,846㎡	· A=3,551㎡	증) 705
공공 공지	공공공지 4	· A=1,195㎡	· A=1,195㎡	
학 교	초등학교 18	· A=13,200㎡	· A=13,200㎡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주)한국자산신탁 대표자 김규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나. 준공예정일 ㄱ 기정 : 2019. 12. 30.

ㄴ 변경 : 2020.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	예수리	273	전	1,447	1,447	828	828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	예수리	275 16	원	662	662	662	656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	예수리	599 11	대	167	167	167	16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	예수리	599 12	답	142	103	142	103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	예수리	599 13	대	921	794	515	388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	예수리	599 14	답	735	659	208	15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	예수리	599 15	답	20	20	20	2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8	예수리	599 22	답		39		39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9	예수리	599 23	대		127		12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0	예수리	599 24	답		76		5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1	예수리	781 7	잡	3,521	3,493	3,521	3,493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2	예수리	781 9	대	238	231	238	23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3	예수리	781 11	잡		17		1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4	예수리	781 12	대		7		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5	예수리	792 17	답	26	26	1	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6	예수리	795 1	대	357	357	17	1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7	예수리	795 2	대	598	598	24	2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8	예수리	795 5	답	549	536	172	16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9	예수리	795 7	잡	624	591	166	119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0	예수리	795 8	잡	265	244	71	5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구분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집면적		소유자	주 소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21	예수리	795 10	답		12		12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2	예수리	795 11	잡		33		33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3	예수리	795 12	잡		21		2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4	예수리	796 2	답	124	107	74	52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5	예수리	796 3	답		17		1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6	예수리	797 1	답	9	9	7	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7	예수리	799 2	답	12	7	12	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8	예수리	799 3	답		5		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9	예수리	800 3	전	265	165	265	16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0	예수리	800 4	대	658	622	565	529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1	예수리	800 5	전		100		10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2	예수리	800 6	대		36		36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3	예수리	801	잡	433	433	433	433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4	예수리	801 1	답	35	35	35	3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5	예수리	801 2	대	804	804	804	80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6	예수리	801 3	잡	938	937	938	93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7	예수리	801 4	잡		1		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8	예수리	802 2	대	857	857	508	508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9	예수리	803 6	답	461	461	1	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0	예수리	804	대	588	588	588	588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1	예수리	804 2	대	1,132	1,132	1,132	1,132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2	예수리	804 3	답	177	177	177	17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3	예수리	804 5	대	540	540	540	54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4	예수리	804 6	대	649	649	649	649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5	예수리	805 1	대	1,838	1,838	1,838	1,838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6	예수리	805 2	답	489	489	489	489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7	예수리	805 3	대	573	573	573	573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8	예수리	805 5	대	567	567	567	56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9	예수리	806	대	585	585	585	58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0	예수리	806 4	전	312	312	90	9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구분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51	예수리	806 5	전	42	42	41	4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2	예수리	807 3	도	737	737	85	8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3	예수리	807 4	임	441	441	1	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4	예수리	830 4	구 대	1,759	1,759	553	553	국(기획재정부)				
55	예수리	835 4	도 대	1,074	500	839	411	국(기획재정부)				
56	예수리	835 6	대		55		55	국(기획재정부)				
57	예수리	835 7	대		452		325	국(기획재정부)				
58	예수리	산 61 2	임	8,430	8,430		43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9	예수리	산 61 7	임	923	923	52	10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0	예수리	산 61 8	임	860	860	860	86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1	예수리	산 61 9	임	444	444	444	443	국(기획재정부)				
62	예수리	산 62	임	3,967	3,967		22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3	예수리	산 64 18	임	40,750	40,750	7,169	7,31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4	예수리	산 65 4	도	298	220	298	22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5	예수리	산 65 5	도	397	397	397	39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6	예수리	산 65 7	임	209	209	209	209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7	예수리	산 65 8	임		574		57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8	예수리	산 65 9	도		4		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9	예수리	산 66 4	임	2,671	531	2,671	53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0	예수리	산 66 9	임	1,686	813	1,686	80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1	예수리	산 66 10	임	263	194	263	19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2	예수리	산 66 13	임	3,973	3,761	1,133	1,04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3	예수리	산 66 14	임	2,170	2,170	565	56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4	예수리	산 66 16	임	254	254	254	25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5	예수리	산 66 17	임	561	561	344	34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6	예수리	산 66 23	임	220	220	220	22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7	예수리	65 1		13,085		73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계				107,532	91,574	36,443	33,796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당해 시설은 공사완료 공고와 동시에 관리청인 사천시에 귀속됨.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사천시 공고 제2020-734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6. 11.

##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0. 6. 11. ~ 2020. 6. 25.(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13두0314	투싼(TUCSON)	박*식	2020. 05. 19.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으나, 이후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운행정지 요청함.

####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9 호

사천시 공고 제2020-736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6. 11.

##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0. 6. 11. ~ 2020. 6. 25.(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21버6979	투싼(TUCSON)	강*훈	2020. 05. 22	명의를 빌려준 이후 연락이 두절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현재 차량 소유자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

####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